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86 발의연월일: 2025. 2. 12.

발 의 자:김영배·이병진·전현희

김용만 · 김태선 · 복기왕

김영호 · 조승래 · 이학영

강유정 • 한정애 • 홍기원

문금주 • 한병도 • 박선원

서삼석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유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, 감면율을 2025년 40%, 2026년 30%, 2027년 20%로 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할 계획임.

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,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'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'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, 50%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

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2070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을 제8조의4로 하고,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제8조의3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) ① 「유료도로법」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권리권자는 같은 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 다만, 「도로법」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.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조의3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	통행료 감면) ① 「유료도로
	법」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
	및 유료도로권리권자는 같은
	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
	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환경친화
	적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
	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 다
	만, 「도로법」 제77조제1항을
	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
	면하지 아니한다.
	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행
	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
	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
	<u>수 있다.</u>
법률 제20701호 환경친화적	법률 제20701호 환경친화적
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	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이 2 (새 랴)	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이4 (처해 제8조이2과 가유)
<u>제8조의3</u> (생 략)	<u>제8조의4</u> (현행 제8조의3과 같음)